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3월 5일, 박춘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3월 13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3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춘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(안 제16조제4항)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5항)
- 주요 업무 수행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7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3. 14.)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(대표 발의)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(안 제16조제4항)
-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5항)
- 주요 업무 수행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7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에서 ‘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인사혁신처에서는 주요정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¹⁾를 추진하며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속적인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6조제4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<현 행>	<개 선>
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: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	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10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

1) **현행** 재직기간별 11일~21일 연가 차등 부여 → **개선** 저연차 구간 연가 확대

- 안 제16조제5항에서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 근무 처우를 개선하며 공직 적응을 도모하고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.

※ 새내기 특별휴가: 5일 부여, 5년 이내에 분할 사용 가능

- 안 제16조제7항에서는 장기간 격무 또는 선거사무 등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의정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,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공무원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 진작 및 조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[붙임 2]

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박 춘 희 의원

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3월 5일

대표발의자: 박춘희 의원

발의자: 심현정, 김성기, 이은미,
이창열, 김광성, 남진삼 의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 조문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신규 및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휴가(안 제16조)

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
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5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”를 “진단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
2.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, 선거(투표, 개표)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
3. 그 밖에 의회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

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6조제4항(중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
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
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
제16조제4항(중전의 제8항)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10일”을 “15일”로 하
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이상”을 “이상 30년 미만”으로 하며,
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9항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
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.

2.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병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<u>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/u></p> 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여성공무원은 매 생리시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,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</u></p> <p>1. <u>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</u></p> <p>2. <u>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</u></p> <p>3. <u>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(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(月)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(月)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)</u></p>	<p>제15조(병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진단 서----- -----.</p> 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,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<신 설>

⑥·⑦ (생략)

⑧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

<삭 제>

⑤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하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
2.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, 선거(투표, 개표)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
3. 그 밖에 의회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·③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

④ ----- 5년 -----

수 없으며,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: 20일

3. (생략)

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1. (생략)

2.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

3. (생략)

⑩ 의장은 의정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⑪·⑫ (생략)

-----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
2. ----- 15일

3. ----- 이상 30년 미만 -----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⑥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⑧·⑨ (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)

[관계법령]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23. 12. 11.] [대통령령 제33906호, 2023. 12. 5., 일부개정]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
바에 따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2